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알기 쉬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3년 5월 22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정기수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 43 호

알기 쉬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소속 공무원”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사무국·전문위원실(이하 “사무실”이라 한다)별”을 “사무국·전문위원실별”로 한다.

제2조(「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북구의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북구의회 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규칙”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배지의 양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등은 다음과 같다.

1. 깃발의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한다.
2. 깃발 중앙에는 속에 “의회”자가 새겨진 무궁화 표지(標識)를 배치한다.
3. 표지의 지름은 깃발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표지의 무궁화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 안의 바탕은 백색으로 하고 “의회”자는 금색으로 한다.
5. 깃봉의 제작은 국기봉의 제작방법을 준용하되, 국기봉을 병용하여 사용한다.
6.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의회건물내외”를 “의회 건물 내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옥내”를 “실내”로, “후렌지”를 부착한다”를 “둘레에 금실을 부착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의회에 대한 예의)”를 “(의회기에 대한 예의)”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배지제식)”을 “(배지양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원의 배지 제식”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배지 양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번호순은”을 “번호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원등록순서에 의하며 번호순으로”를 “의원등록과 동

시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항의 사유로”를 “제2항에 따라”로, “신고자가”를 “본인이”로 한다.

제4조(「부산광역시 북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전단 중 “의한 계획에 따라”를 “따라”로 한다.

제5조(「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의 제목“(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을“(신분증 규격, 양식 및 색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식”을 “양식”으로 한다.

제4조 중 “의회의장”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6조(「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북구의회”로,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를 “직무대리”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리한다”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를

“때에는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로 하며, 같은 항 제 2호 중 “ 「지방자치법」 제60조”를 “법 제6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7조(「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북구의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회에”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5조제2항 후단 중 “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위원장”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을 “(본회의에 부치지 않는 청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부의하지 아니하기”를 “부치지 않기”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부의할”을 “부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부의하여야 한다”를 “부쳐야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의하기”를 “부치기”로 한다.

제13조제2호 중 “부의할”을 “부칠”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 제1조(「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u>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u>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공무원</u>----- ----- ----- --.</p>
<p>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와 관리) ① 의장은 <u>소속 공무원의</u>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p>	<p>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와 관리) ① ----- <u>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u>----- -----.</p>
<p>② 근무상황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u>사무국·전문위원실</u> (이하 “사무실”이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부서의 특성상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사무국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 ----- ----- <u>사무국·전문위원실별</u>----- ----- -----. ----- ----- ----- ----- --.</p>
<p>③·④ (생략)</p>	<p>③·④ (현행과 같음)</p>

제2조(「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북구의회 규칙-----                      -----                      -----                      ----.</p>
<p>제2조(전문) ①<u>규칙</u>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2조(전문) ①<u>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u>                      -----.</p> <p>② (현행과 같음)</p>

제3조(「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배지의 양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등은 다음과 같다.</p> <p>①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한다.</p> <p>②기면은 중앙에 무궁화, 무궁</p>	<p>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등은 다음과 같다.</p> <p>1. 깃발의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한다.</p>

화속에 “의회”자를 표식한다.

③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④표식의 무궁화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자막내는 백색으로 하고 원자막내의 “의회”자는 금색으로 한다.

⑤기봉의 제작은 국기봉의 제작 방법을 준용하되, 국기봉을 병용하여 사용한다.

⑥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게양) ①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옥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후렌지”를 부착한다.

② (생략)

제5조(의회에 대한 예의) (생략)

제6조(배지제식) ①의원의 배지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②의원의 배지는 이면에 의원대

2. 깃발 중앙에는 속에 “의회”자가 새겨진 무궁화 표지(標識)를 배치한다.

3. 표지의 지름은 깃발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표지의 무궁화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안의 바탕은 백색으로 하고 “의회”자는 금색으로 한다.

5. 깃봉의 제작은 국기봉의 제작 방법을 준용하되, 국기봉을 병용하여 사용한다.

6.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게양) ① ----- 의회 건물 내외-----  
실내----- 둘레에 금실을 부착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현행과 같음)

제6조(배지양식) ①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배지 양식---

②-----



제5조(「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삭 제>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신분증 규격, 양식 및 색상) ①----- ----- ----- 양식 -----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
제7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사무국장이 정한다.	제7조(위임규정) -- 규칙 ----- ----- -----.

제6조(「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제1조(목적) -----

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 규정에 따라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2. 의장과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으로 대리한다.

-- 북구의회-----  
-----  
----- 직  
무대리-----  
-----  
-----.

제2조(법정대리) ① -----  
-----  
-----  
-----  
----- 직  
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  
다.

1. ----- 때에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  
--.

2. -----  
----- 법 제60조-----  
-----.

② ----- 사무국  
장-----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북구의회----- ----- ----- ----- -----.</p>
<p>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 ----- -----.</p>
<p>②·③ (생략)</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 ----- 어느 하나에 ----- ----- -----.</p>
<p>1. ~ 4. (생략)</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5조(이의신청) ① (생략)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p>	<p>제5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p>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제 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 1. ~ 3. (생략)

제11조(심사보고) ①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  
-----  
----. -----  
-----  
-----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10조(본회의에 부치지 않는 청원) -----  
---- 어느 하나에 -----  
--- 부치지 않기-----  
----.

- 1. ~ 3. (현행과 같음)

제11조(심사보고) ① -----  
----- 부칠 -----  
-----  
-----.  
-----  
-----  
-----  
----- 부쳐야한다.

②----- 부치지-----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1. 2. (생략)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  
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  
에게 통지한다.

1. (생략)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  
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

3. ~ 5. (생략)

-----  
-----.

1. 2. (현행과 같음)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

-----  
-----.

1. (현행과 같음)

2. -----

부칠 -----

-----

3. ~ 5. (현행과 같음)